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병원 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병원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병원내 CCTV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위반 사례	위반 조항	행정 처분
가.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하고 환자들은 병원 안내에 따라 탈의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나. 공개된 장소에 방범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법정 안내판(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을 부착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귀 기관(단체)에서는 회원 병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붙임 카드뉴스)을 귀관 홈페이지, 소식지(뉴스레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카드뉴스.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유관 기관, 단체 등

주무관 **김보경** 행정사무관 **출장** 조사1과 과장 **이정은** 전결 2023. 3. 22.

협조자

시행 조사1과-384 (2023. 3. 22.)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www.pipc.go.kr

전화번호 02-2100-3127 팩스번호 02-2100-3009 / bkkim15@korea.kr / 대국민 공개